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층수에서 제외한다”를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1) 중 “주거용”을 “그”로,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를 “10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100퍼센트)”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주거용”을 “그”로,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를 “10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100퍼센트)”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중 “주거용”을 “그”로,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를 “10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10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3709